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거나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자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 등의 통지 기산점에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박 범 계

법무부장관

●법률 제17936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을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를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로 한다.

-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

박 범 계

●**법률 제17937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선고”를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불기소처분”을 “불송치결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을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는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기소유에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를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에나 제1항제3호·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를 “제1항제1호·제2호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같은 항 제3호”를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